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 (생략)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u>간이투자설명서</u>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 (현행과 동일)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 대상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 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 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2) 투자 제한	2. 다.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u>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u>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2. 다.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u>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u>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주1)~주2) (생략)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u>발행분담금</u>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주5) (생략)	주1)~주2) (현행과 동일)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u>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부분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u>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주5) (현행과 동일)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작성일 등의 기준으로 갱신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다. 업무의 위탁 ~~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기준 가격계산업무를 <u>HSBC서비스</u> 에 위탁하였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다. 업무의 위탁 ~~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기준 가격계산업무를 <u>우리펀드서비스</u> 에 위탁하였습니다.~~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3)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갱신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4)운용자산규모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제4부.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2) 주요 업무 나. 의무 및 책임	(생략) -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u>투자설명서</u>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현행과 동일) -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u>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u>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제4부.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u>HSBC펀드서비스</u>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u>우리펀드서비스</u>
제4부.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사명변경> <u>나이스채권평가 (www.nicepricing.co.kr)</u>	<사명변경> <u>NICE피앤아이 (www.nicepni.com)</u>
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나.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② 의결권 행사방법 - <u>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u>4분의 1 이상</u> 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u>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u>	② 의결권 행사방법 - <u>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u>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u>5분의 1 이상</u> 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u>

	<p>- (생략)</p>	<p>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 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u> • <u>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u> • <u>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u> • <u>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u> <p>- (현행과 동일)</p>
<p>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나.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③ 연기수익자총회</p> <p>-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u></p> <p>- <u>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합니다.</u></p>	<p>③ 연기수익자총회</p> <p>-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u></p> <p>- <u>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p>	<p>다. 수익자총회 결의사항</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신탁업자의 변경 <p>•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p>	<p>다. 수익자총회 결의사항</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동일)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p>•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신설) • (생략) 	<p>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현행과 동일)
<p>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p> <p>라.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권</p>	<p>라.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p> <p>-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집합투자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 (생략)</p>	<p>라.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p> <p>-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p>- (현행과 동일)</p>
<p>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p> <p>4) 손해배상책임</p>	<p>- (생략)</p> <p>-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p>	<p>- (현행과 동일)</p> <p>-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그 증권의 <u>인수계약을 체결한 자(인수계약을 체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u>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동일) · 그 증권의 <u>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u>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매출인</u>
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우리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wooriam.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동일)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우리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wooriam.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1) 정기보고서	<p>① 영업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u>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이 기재된 서류</u> 	<p>① 영업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동일) · <u>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u>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1) 정기보고서 나. 자산운용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u>으로 표시한 경우 <p>-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동일)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으로 표시한 경우 <p>- (현행과 동일)</p>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수시공시 다.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발행한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의탁증권을 포함)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u>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u> · <u>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발행한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의탁증권을 포함)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u>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u> · <u>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u>

	• (생략)	• (현행과 동일)
제5부.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3)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운용사 선정 기준 통합으로 인한 변경사항 반영

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부. 5.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제1부. 6. 투자실적 추이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주1)~주2) (생략)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u>발행분담금</u>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주6) (생략)	주1)~주2) (현행과 동일)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u>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부분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u>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주6) (현행과 동일)
제3부. 요약 재무정보		작성일 등의 기준으로 갱신
	<신설>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설명 확인서 신설